

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용 석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
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
지방공기업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
규정하고 있습니다.

□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질
개선 및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서울시는 법에 따라 업무용
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경우 70% 이상 환경친화적
자동차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,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을
구매비율을 지키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.

□ 이에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조항을 서울시와 지방공기업은 의무로 확대하고, 출자·출연기관은 법률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하여 서울시가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개정을 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서울 만들기에 일조하기 위한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